

구민의 작은 목소리에도
귀 기울이는 금천구의회

복지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
2021. 6. 10.(목) 10:00

제229회 금천구의회 정례회 심사안건 검 토 보 고 서

서울특별시 금천구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
(도시안전국 소관)



복 지 건 설 위 원 회
전문위원 추병수

서울특별시 금천구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

1. 제안경위

- 가. 의안번호 : 제2103호
- 나. 제 출 자 : 김영섭 의원
- 다. 제출일자 : 2021. 5. 28.
- 라. 회부일자 : 2021. 5. 28.

2. 제안이유

금천구에서 열리는 공연 축제 등 각종 옥외행사 시 발생할 수 있는 재난이나 사고를 예방하고 적절히 대응하기 위하여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가. 적용범위 (안 제3조)
- 나. 구청장의 책무 (안 제 4조)
- 다. 안전관리계획 (안 제5조)
- 라. 안전점검, 긴급안전조치, 안전요원 배치 (안 제6조 ~ 제8조)
- 마. 지원요청 (안 제9조)

4. 참고사항

- 가. 관련법령
 -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66조의11
 - 「공연법」 제11조
- 나. 예산조치 : 필요시 예산조치
- 다. 입법예고 : 2021. 5. 28. ~ 6. 2.

5. 검토의견

가. 조례안 제정 이유

본 조례안은 금천구에서 열리는 공연·축제 등 옥외행사 중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하여 주민의 생명·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의원발의 되었으며 총 10개의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음.

나. 주요 내용

1) 적용범위 (안 제3조)

- 최대 관람객 500명 이상 1,000명 미만의 옥외행사에 적용 범위를 정하였으며 이는 상위법령인 「공연법」 과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관련 규정이 1,000명 이상의 관람이 예상되는 옥외 공연이나 지역축제의 경우에만 재해예방 조치 또는 안전관리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그 미만의 소규모 공연·축제 등에 대한 안전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하는 것임.

2) 구청장의 책무 (안 제 4조)

- 옥외행사 시 안전관리를 위한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여 조례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.

3) 안전관리계획 (안 제5조)

4) 안전점검, 긴급안전조치, 안전요원 배치 (안 제6조 ~ 제8조)

다. 검토의견

-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에서 안전 조치를 규정하고 있는 1,000명이상 옥외 행사의 범위를 벗어나는 법 적용 안전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안전관리대책 강화로 사전에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안전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취지로서 법령의 범위에서 타당하다고 사료됨.

관계법령

□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

[시행 2020. 12. 10.] [법률 제17479호, 2020. 8. 18., 일부개정]

제66조의11(지역축제 개최 시 안전관리조치)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축제를 개최하려면 해당 지역축제가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, 그 밖에 안전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□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」

[시행 2021. 1. 5.] [대통령령 제31380호, 2021. 1. 5., 타법개정]

제73조의9(지역축제 개최 시 안전관리조치) ① 법 제66조의11제1항 및 제3항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축제”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축제를 말한다. <개정 2018. 1. 18., 2020. 6. 2.>

1. 축제기간 중 순간 최대 관람객이 1천명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축제

2. 축제장소나 축제에 사용하는 재료 등에 사고 위험이 있는 지역축제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축제

가. 산 또는 수면에서 개최하는 지역축제

나. 불, 폭죽, 석유류 또는 가연성 가스 등의 폭발성 물질을 사용하는 지역축제

② 법 제66조의11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(이하 “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”이라 한다)에는 각각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 <개정 2018. 1. 18., 2020. 6. 2.>

1. 지역축제의 개요

2. 축제 장소·시설 등을 관리하는 사람 및 관리조직과 임무에 관한 사항

3. 화재예방 및 인명피해 방지조치에 관한 사항

4. 안전관리인력의 확보 및 배치계획

5. 비상시 대응요령, 담당 기관과 담당자 연락처

③ 법 제66조의11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지역축제를 개최하려는 자가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려면 개최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, 소방서 및 경찰서 등 안전관리 유관기관의 의견을 미리 들어야 한다. <개정 2020. 6. 2.>

④ 법 제66조의11제3항에 따라 지역축제를 개최하려는 자는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축제 개최일 3주 전까지 관할 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. 이 경우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축제 개최일 7일 전까지 변경된 내용을 제출해야 한다. <신설 2020. 6. 2.>

⑤ 행정안전부장관은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이 효율적으로 수립·관리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지역축제 안전관리 매뉴얼을 작성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고 행정안전부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. <개정 2014. 11. 19., 2017. 7. 26., 2020. 6. 2.>

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의 세부적인 내용 및 수립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. <개정 2014. 11. 19., 2017. 7. 26., 2020. 6. 2.>

[본조신설 2014. 2. 5.]

□ 「공연법」

[시행 2020. 12. 10.] [법률 제17398호, 2020. 6. 9., 일부개정]

제11조(재해예방조치) ① 공연장운영자는 화재나 그 밖의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그 공연장 종업원의 임무·배치 등 재해대처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관할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 이 경우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신고 받은 재해대처계획을 관할 소방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 <개정 2015. 5. 18.>

② 관할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제1항 전단에 따라 신고를 받은 재해대처계획을 검토하여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신고된 재해대처계획의 내용이 미흡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. <개정 2019. 11. 26.>

③ 제2항 후단에 따라 재해대처계획의 보완을 요구받은 공연장운영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 보완하여 관할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다시 신고하여야 한다. <신설 2019. 11. 26.>

④ 공연장 외의 장소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관람자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공연을 하려는 자의 재해예방조치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. <개정 2015. 5. 18., 2019. 11. 26.>

⑤ 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재해대처계획에는 제11조의2부터 제11조의4까지에 해당하는 안전관리비, 안전관리조직, 안전교육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 <신설 2015. 5. 18., 2019. 11. 26.>

⑥ 그 밖에 공연장의 재해예방조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 <개정 2015. 5. 18., 2019. 11. 26.>

[전문개정 2011. 5. 25.]

□ 「공연법 시행령」

[시행 2020. 11. 24.] [대통령령 제31176호, 2020. 11. 24., 타법개정]

제9조(재해대처계획의 신고 등)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재해대처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모두 포함되어야 한다. <개정 2016. 5. 17.>

1. 공연장 시설 등을 관리하는 자의 임무 및 관리 조직에 관한 사항
2. 비상시에 하여야 할 조치 및 연락처에 관한 사항
3. 화재예방 및 인명피해 방지조치에 관한 사항
4. 법 제11조의2부터 제11조의4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안전관리비, 안전관리 조직 및 안전교육에 관한 사항

②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공연장운영자(이하 “공연장운영자”라 한다)는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다음 연도의 재해대처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2월 31일까지 관할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, 신고한 재해대처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 계획을 적용하기 전에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. 다만, 공연장운영자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공연장을 등록하는 경우에는 공연장 등록 신청과 함께 해당 연도의 재해대처계획을 신고하여야 한다. <개정 2015. 11. 18., 2016. 5. 17.>

③ 공연장 외의 시설이나 장소에서 1천명 이상의 관람이 예상되는 공연을 하려는 자는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해당 시설이나 장소 운영자와 공동으로 공연 개시 14일 전까지 제1항 각 호의 사항과 안전관리인력의 확보·배치계획 및 공연계획서가 포함된 재해대처계획을 관할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,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공연 7일 전까지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. <개정 2015. 11. 18., 2018. 11. 27.>

[전문개정 2011. 11. 25.]